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신설 2024. 8. 6.>

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(제29조의5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	법 제36조의4 제3항	발급취소 · 영업정지 3개월	발급취소 · 영업정지 6개월	발급취소 · 영업정지 6개월
나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	법 제36조의4 제3항	발급취소	발급취소 · 영업정지 3개월	발급취소 · 영업정지 6개월